

광주지방법원 2018. 6. 19 선고 2016가단52139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론 종결 2018. 6. 5

판결 선고 2018.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B은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6. 3.16. 접수 제44023호로 마친 (1)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② 피고 C은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6. 3. 16. 접수 제44023호로 마친 (2)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6. 피고들에게 각 채권최고액 3,000만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다음과 같은 경위로 설정된 것이어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이거나,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원고는 D와 전남 장성군에 있는 E을 공동으로 운영했는데, D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F 직원들인 피고들이 체불퇴직금 지급을 원고에게 요구하며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원고와 원고의 딸을 죽이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였음- 이에 원고가 강박에 의해 피고들에게 각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작성해 줌- 피고들이 그 지불각서에 기해 원고 소유 광주 북구 G외 3필지 및 지상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 1,300만원을 지급하고 가압류를 해제함- 피고들이 3,0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하라고 원고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였고,이에 원고가 피고들이 작성해 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날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것임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와 D는 사실혼관계로서 F 및 E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동반자였고,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사실상 사용자의 위치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를 지급해야 할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합의각서를 피고들에게 교부한 것일 뿐 그 과정에서 피고들이 원고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역시 원고와 피고들 간에 이루어진 합의내용에 따라 법무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원고를 협박하여 위 합의각서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밖에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강동혁

별지